

2015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

- 일시 및 장소 -

이사회

일시 : 2015년 12월 18일(금) 11:10 ~ 12:00

장소 : 광화문 코리아나 호텔 2층 다뉴브 양식당 내 프린스 룸

정기총회

일시 : 2015년 12월 18일(금) 17:40

장소 : 광화문 코리아나 호텔 2층 다뉴브 양식당 내 프린스 룸

- 차 례 -

2015년 이사회 회의자료 ----- 1

2015년 정기총회 회의자료 ----- 3

2015년 집행부 및 임원 명단

회 장 : 정찬모 (인하대)

수석부회장 : 왕상한 (서강대)

기획이사 : 유준구(국립외교원)

총무이사 : 박언경(경희대)

국제이사 : 마광(절강대), 이세련(전북대)

사무국장 : 박주석(전북대)

부회장 : 배정생 (전북대), 이재민 (서울대), 강준하(홍익대)

연구이사 : 오선영(숭실대)

편집이사 : 유희진(안양대)

홍보이사 : 조영진(이화여대)

감사 : 최혜선 (전남대), 이길원 (충남대)

2015년 이사회 회의자료

1. 개회선언
2. 참석인원 확인
3. 회장님 인사말씀
4. 2015년도 업무보고

분야	주요내용	
연구 · 국제 분야	총 6 회 국내 3회 국제 3회	4월 국제경제법학회·인하대 법학연구소·연세대 법학연구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 공동학술대회(신진학자): 경제변동기 국제경제법학의 현재와 미래이슈-(4월 3일(금) / 인하대)
		5월 국제경제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숭실대학교 경제통상연구소 공동학술대회: 한·중 FTA 성과와 과제에 대한 조망- 13억 대륙이 제공하는 기회와 도전-(5월 15일(금) / 국회입법조사처)
		6월 국제경제법학회·법제연구원·중국국제경제법학회 공동학술대회: 한·중FTA 법적 쟁점과 과제- (6월 23일(화) / 중국 복건성 샤먼대학(Fujian Xiamen)
		8월 2015년 제6회 WTO/FTA 모의재판 경연대회 (8월 29일(토) / 서울대)
		10월 국제경제법학회·대한상사중재원 공동 국제학술대회: Int'l Trade, Investment and Arbitration: Trends and Future Prospects-(10월 29일(목) / 서울중재센터)
		12월 국제경제법학회·연세대 법학연구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전북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 국제학술대회: TPP타결 등 격변하는 국제무역규범 현안의 진단과 처방: 서비스, 금융, 정부조달, 환경을 중심으로 (12월 18일(금) / 광화문 코리아나 호텔)
기획 분야	통상법포럼	제1회 통상법포럼(4월 17일, 팔레스호텔) 1. 우리나라 WTO 분쟁 동향(신정훈 통상법무과장), 2. FTA상의 미래MFN 조항 적용 가능성 검토(고려대 공수진 박사)
		제2회 통상법포럼(5월 1일, 팔레스호텔) 1. 유전자원·전통지식(GRTKF) FTA 규범 논의동향 및 시사점(경상대 류예리 교수), 2. WTO TRIPs 유전자원·전통지식 논의 동향(김진 다자통상과장)
		제3회 통상법포럼(5월 15일, 팔레스호텔) 1. EU 환경규범 논의동향 및 시사점(연세대 박덕영 교수), 2. 주요 FTA(한-미, 한-중, TPP) 환경챕터 분석 및 시사점(숭실대 오선영 교수), 3. DDA 수산보조금 논의 동향(김호철 WTO과장)
		제4차 통상법포럼(5월 29일, 팔레스호텔) 1.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WTO 분쟁 대응 방안(정기창 화우변호사)
		제5차 통상법 포럼(6월 12일, 팔레스호텔) 1. 국제투자통상법상 국영기업에 대한 규율과 협상 동향(서울시립대 김대원 교수), 2. 환율조작문제에 대한 미국의회의 움직임-법적 검토(숭실대 서철원 교수)
		제6차 통상법 포럼(9월 22일, 팔레스호텔) 1. 세이프가드 제도 개요 및 다자 FTA에서 세이프가드 규범(조사조치 적용범위)(인천대 손기윤 교수), 2. WTO 분쟁사례를 통한 세이프가드 주요 법률적 쟁점 분석(조영재 변호사)
		제7차 통상법 포럼(11월 13일, 팔레스호텔) 1. 철강분야 수입규제(보조금 중심) WTO 분쟁사례 분석(서울대 이재민 교수), 2. 최근 외국의 수입규제 조사(보조금 구성요건 중심)의 쟁점과 대응방안(이상범 변호사)
출판 분야	국제경제법 연구 발간	제13권 제1호(3편), 제13권 제2호(6편), 제13권 제3호(6편) - 총15편 게재 * 제13권 제1호를 제외하고, 논문접수마감일 연장
	2015 국제투자분쟁연구 발간	2014년에 이어 연속사업으로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지원 하에 총 5편 논문 집필중
총무 분야	회계보고	별첨 수입지출내역서 참조

5. 10월 임시이사회 결과 보고

- 국제경제법학술상 신설안 의결.
 - * 다만, 학술상 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고려하여 학술상 상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시상만 진행토록 함.
- 제도개선위원장 검토제안에 대한 보고 및 토론
 - * 회원의 가입절차 신설 / 회장의 중임규정 신설 / 회장의 연임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임기의 개시 시기 등을 명확하게 하는 규정 등) 신설에 대해 총의로 의결
 - * 이사회의 권한 규정 보완 / 이사의 임기 규정 보완 / 임원회비 규정 보완 / 기타 자구 수정 등 (예, 제 17조 결의 → 의결)은 보완작업을 진행토록 함.

6. 차기회장 선출결과 보고 (정관 제13조 2항)

- 18일 10시 30분부터 개최된 차기회장추천위원회의 선출결과를 보고
- 차기회장추천위원회의 구성 : 전임회장단, 현임회장

7. 감사 추천건

- 관련규정 : 정관 제13조 4항(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함)
- 경과보고
 - * 2014년도 이사회에서는 감사선출과 관련하여 1인은 시니어, 1인은 주니어로 안배를 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 * 또한 전년도 총회에서 논의하였던 것처럼 2인의 감사 중 1인은 유임을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 * 이에 2015년 감사는 이길원 교수(유임)와 최혜선 교수(신임)총회에서 선출 되었음

8. 기타안건

9. 폐회

2015년 정기총회 회의자료

1. 개회선언
2. 참석인원 확인
3. 회장님 인사말씀
4. 2015년도 업무보고 (이사회 자료 참조)
 - 1면의 해당항목 참조
5. 감사보고
 - 이길원, 최혜선 감사
6. 10월 임시이사회 결과 보고 (이사회 자료 참조)
 - 2면의 해당항목 참조
7. 논의사항
 - 1) 정관개정건
 - 10월 임시이사회 논의에 따른 정관개정 절차 진행
 - (1) 회장 중임규정 신설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12조(임원) (1) 본 학회에는 1명의 회장과 약간 명의 부회장, 각 70명 이내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2) 본 학회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의 보직이사를 둘 수 있다. (3) 회장과, 부회장, 감사 보직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차기회장은 당연히 수석부회장으로 위촉한다. (5)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 (1) 현행대로 (2) 현행대로 (3) 회장과, 부회장, 감사 보직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혹은 중임 할 수 있다. (4) 현행대로 (5) 현행대로	학회의 회장이 너무 빨리 내려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장을 역임했던 분도 회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임규정을 추가함.

(2) 회장 연임규정 신설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13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부회장 및 보직이사를 위촉한다. (2) 차기회장은 임기개시 1년 전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되며 회원은 관련임원들을 추천할 수 있다. (4)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가 감사로 선출된 경우 이사의 직무는 정지되며 감사의 직무를 마친 후 이사의 임기를 계속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의 선출과 현 회장의 연임은 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한다. 선출 혹은 연임된 회장은 당해 연도 부회장 및 보직이사를 위촉한다. (2) 차기회장은 임기개시 1년 전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현 회장의 임기가 연임된 경우에는 차기회장의 임기개시 시점도 자동적으로 1년 늦추어진다. (3) 이사는 2명 이상의 현 이사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4) 현행대로	회장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함. 현 회장 연임시의 차기회장 임기개시 시기를 명확하게 함. 신임이사에 대해 일반회원이 추천하는 것이 이상하여 이를 수정하고, 추천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3) 회장임기 관련 부칙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부칙 (1) 이 정관은 총회에서 개정의결된 즉시 발효한다.	개정된 정관을 의결한 총회에서 적용되는 회장 선출에서부터 적용하기 위한 것임.

(4) 회원가입절차 신설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20조(회칙의 개정) (1) 본 회칙의 개정에는 회장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공동발의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정회원으로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회원은 직무이사회에 결의에 따라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의 2(회원의 가입절차) (1) 본 학회의 정회원이나 학생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회에 제출하고, 신청자의 회원승인 여부는 직무이사회에서 그 자격을 심사, 의결하여 정한다. (2) 현재 학생회원인 자가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전항의 절차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회칙의 개정) (1) 본 회칙의 개정에는 회장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공동발의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정회원으로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회원은 직무이사회에 결의에 따라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와 7조에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절차를 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정관에서 회원가입절차가 없어 1항을 신설함. 그리고 2항은 현행의 제20조 2항을 신설되는 제7조의 2의 2항으로 이동시키면서 다소 수정함. 현행 제20조(2)항의 내용은 조문 제목과 달라 이를 위의 신설되는 제7조의 2항으로 이동시키면서 항의 번호를 조정함.

(5) 자구수정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10조 (총회의 개최 및 의결) (3)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 (총회의 개최 및 의결) (3)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자구수정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3) 기타 이사회에서의 부의한 사항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3) 기타 이사회에서 의 부의한 사항	자구수정

2) 차기회장 선출 (정관 제13조 2항)

- 경과보고

- * 18일 전임회장단, 현임회장으로 구성된 차기회장추천위원회의 개최
- * 차기회장 추천자 :
- * 2014년 이사회에서는 권리는 없이 의무만 부담하게 되는 학회장직을 투표의 형식으로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이사회 참석자 모두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향후에도 학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전통이 정착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동 의견에 이사회 참석자 모두 인식을 같이하였음.

3) 감사 선출

- 관련규정 및 경과보고

- * 2면의 해당항목 참조

- 2016년 감사 후보자 2인 :

8. 기타 사항

9. 폐회